

2. 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9 . 1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8월 29일 · 조기태 의원 외 7인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9. 19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조 기 태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,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8.5.1 조례로 정하여 설치된 동의 하부조직인 통·반조직을 운영함에 있어,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 및 통·반조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1통의 기준 6개 반 내지 8개 반을 10개 반으로 2개 반을 늘려 상향조정하고,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60가구로 20가구를 늘려 상향조정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의 경우에 통·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함 (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)
- 통장의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4조)
-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【남(72.1세)·여(79.5세)】이 75.9세임을 감안하여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5세 늘리되,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위촉규정을 삭제하여 전·후 문맥을 고르게 정비함 (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)
- 조례의 시행기일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통장의 지위를 존중·보호·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 (부칙 제1항 및 제2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 論 要 旨

○ 김 성 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단서조항을 일부 수정하고,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조정

○ 수정안 본문

- 안 제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함.

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한다.

- 부칙 ①(시행일) 중 “2004년 1월 1일”을 “2004년 7월 1일”로 함.

○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통장의 임기) ①(생략) ②1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한다. ③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. (단서 생략)	제2조(통장의 임기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6개 반 내지 10개 반 -----. ③----- 20가구 내지 60가구----- (단서 현행과 같음)	제2조(통장의 임기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. ③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(단서 현행과 같음)
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>	제4조(통장의 임기) ----- 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해촉된다.	제4조(통장의 임기) ----- 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한다.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생략) ②통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60세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 3.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현행과 같음)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<삭제> <삭제>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현행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<개정안과 같음> <개정안과 같음>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	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(생 략)	부 칙 ①(시행일) ---- 2004년 7월 1일 -----. ②(경과조치) (개정안과 같음)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조기태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룡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한다.

부칙 ①(시행일) 중 “2004년 1월 1일”을 “2004년 7월 1일”로 한다.